

2009. 10. 16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조덕희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의 4 인

의장	총괄	결재	부의장	국장
제천시	2009. 10. 16. 제163회 제천시의회	번호 364 (공 인)	부의장	5555 담당
국회	제천시의회	총괄	국장	5555 담당

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의안발의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조덕희	조덕희	
26. 8. 7	2016. 8. 7	
양수경	6/12/2016	
이정임	이정임	
성명중	성명중	

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1385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10. 16.
발 의 자 : 조덕희 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- 담배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“금연권장구역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- 시장은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를 “클린 에어존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5조)
- 금연교육과 홍보사업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7조)
- 금연실천을 위한 클리닉센터의 설치, 운영,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)

3. 의견수렴

- 방 법 :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
- 기 간 : 2009. 9. 11 ~ 10. 1(20일간)

- 의견제출 : 없음

4. 관계법령

-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
붙임 : 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(이하 "흡연자"라 한다)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돋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금연"이라 함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.
2. "금연권장구역"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, 시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
3. "클린에어존"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을 말한다.

제3조(조례의 범위) 이 조례의 범위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제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.

제4조(금연권장구역의 지정) ① 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어린이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어린이 공원을 말한다)
 2. 학교정화구역 (「학교보건법」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 구역을 말한다)
 3. 야외 경기장·야외 공연장 및 공중화장실
 4.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
 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
-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 단, 금연권장구역의 지정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서 효과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,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클린에어존의 지정) ① 시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소가 원하는 경우 "클린에어존"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소에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,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"자원봉사 단체"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금연활동 지원)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클리닉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, 금연 활동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 및 지속적인 추진) 시장은 시의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시책에 반영함은 물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